

인천 서구 주물공장 악취 피해

[사건개요]

1) 사건요지

- 인천 서구 〇〇동 주민 6명이 인근 주물공장의 악취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900만원의 배상을 요구.

2) 당사자주장

- 신청인들은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생산하는 무허가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와 가축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5,9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금속은 부도난 기존 주물공장을 98년부터 인수하여 황동을 원료로 수도꼭지를 생산하고 있으나, 금년 6월경에 김포로 이전할 계획이며, 악취피해는 공장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청인이 사용하는 개의 분뇨와 개먹이로 사용하는 군부대 잔반 음식물 냄새가 주원인이며, 신청인은 종전 주물공장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만한 유대관계를 위해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

[사실조사]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시 서구 〇〇동 검단 사거리에서 〇〇초등학교 방향 약 1Km지점에 신청인 주택이 있고 주택에서 서측 방향으로 작은 밭을 사이에 두고 피신청인 주물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주택과 주물공장과의 거리는 약 20~30m 정도이며, 분쟁지역 주변에는 철구조물 제작 및 알루미늄 주물공장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장현황

- 본 공장은 현위치에서 93년부터 운영하던 금속을 98년에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부지면적 198㎡, 3층건물 326㎡(100평) 중 1, 2층에서 〇〇재료를 원료로 용해하여 월 약 25,000개의 〇〇를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이다.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서 주물형상물 제조시 부원료로 주물사와 아민계 폐놀수지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시설로는 금속용융시설, 주물형상 코아제조, 선별시설 등이 있고, 오염방지시설로는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이 난채 방치되어 있고 무허가 시설이며, 동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는 불쾌감을 주는 폐놀계 및 아민계 악취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 99. 3. 29~2002. 2. 28일 까지 인천시 서구청에서 동 공장을 상대로 8회에 걸쳐 무허가 시설로 행정처분(폐쇄명령)과 고발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문가 현지조사 시 신청인 주택에서 확인한 결과 동 주물공장의 폐놀계 및 아민계통의 악취가 감지되었다. 다만, 소음 및 먼지 피해는 간이조사 결과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 개 사육장 현황

- 신청인 개 사육장은 비위생적인 견사에 군부대 잔반 음식물을 사료로 식육견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사진으로 제시한 20여마리의 자견 폐사에 대하여 현지확인은 할 수 없었다.

마. 전문가 의견

1) 대기오염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기상자료 및 주물공장 악취 등의 현지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악취 및 대기오염 영향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이 지역의 주 풍향은 기상청에서 관측한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형적인 바람 방향인 서풍계열로서 주물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신청인주택에 영향을 미칠 북서풍 및 서풍계열이 26%, 무풍이 약 11%정도이다.
- 용해, 주조과정 중 배출되는 먼지와 가스를 포집하기 위하여 후드와 덕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방지시설로 설치된 백필터는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중이며 관리를 위한 접근로조차 폐쇄된 상황이었다.
- 백필터의 주요기능인 탈진시스템과 분진 배출용 밸브는 고장 이후 방치된 상태이며, 주물모형재료의 주성분은 주물사 및 폐놀계와 아민계수지로서 코아(주물모형) 제조과정에서 가열온도에 의해 자극성냄새인 페놀가스와 아민가스가 배출되나 방지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현장조사시 강한 취기가 감지되었다.
- 악취감지는 어떤 종류의 냄새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의 강도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냄새는 동 주물공장의 배출시설과의 관련성이 있고, 바람방향과 주거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축 전문가 의견

- 개 사육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견사에서 군부대 잔반 음식물인 비위생적 사료로 식육견을 사육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제시한 20여마리의 자견 폐사는 자연적인 평균 폐사율 15%정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폐사 시기에는 전염성 장염이 전국적으로 번진 시기로 많은 자견이 폐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보상과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과관계]

1) 악취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은 악취피해를 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도 앞서 제시한 의견과 기상조건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야민 및 폐놀계 가스의 경우 극소량의 농도에서도 불쾌감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며, 그 피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해 보건데, 방지시설 가동없이 무허가공장을 계속 가동하여 악취를 배출한 점, 신청인이 계속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한 점, 신청인 주택 인근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악취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2) 악취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병원치료 등 재산피해 여부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은 일반적으로 신청인 이외 지역사람도 나이가 많거나 5년 이상 장기간 흡연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있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장오염으로 인한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악취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개 폐사 피해

- 신청인은 20여마리의 자견폐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도 앞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자견폐사는 식육견 사육 관리상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그 자견폐사 피해를 판단해 보건데, 방지시설 가동없이 무허가공장을 가동하여 악취 등 대기오염을 배출한 점은 있으나, 소규모 공장으로서 오염배출량이 적고 확산에 의하여 희석되는 점, 또한 자견폐사가 일시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공장오염으로 인한 자견폐사 피해와의 인과관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상수준]

1) 배상기준

- 악취 등으로 인한 병원치료비 등 재산피해와 자견폐사 피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상하지 아니한다.

- 악취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신청인 전원에게 배상하되, 배상금액은 악취 등 대기오염배출 피해기간, 과거 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300,000원씩을 배상한다.

- 피해기간은 신청인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조건인 서풍 계열의 풍향빈도 약 26%와 무풍이 약 11% 정도임을 감안하여 36개월 중 13개월을 실제 피해기간으로 본다.

2) 배상액 산정

- 배상금액은 신청인 6명에 1인당 1,300,000원씩 총 7,800,000원이 개인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